

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

(의안번호 제533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3. 10	고 성 군 수
나. 회부일자 : 1999. 3. 13	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9. 3. 25	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
-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
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조례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(안 제4조)
- 수탁기관의 선정(안 제5조)
-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(안 제6조)
 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인 이상 9인 이하
 -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 - 위원은 관계직원 및 군의원 또는 당해 사무에 관련 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
 -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후 자동 해산
- 협약체결 등(안 제9조)
- 지휘감독(안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경상남도표준안(‘99. 1. 5) 지침에 의거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권한의 사무중 일부분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 군재정 향상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
- 군민의 권리 및 편익에 따른 침해와 불편사항이 우려되므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, 토론회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음.

※ 경상남도표준안(‘99. 1. 5) 참조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구체적 기준은
- 답 : 여객자동차 터미널, 공용 유료주차장, 청소년수련실, 노인복지촌, 화장장, 납골당, 연화산도립공원관리 등 13가지 항목 예상분석
- 문 : 민간위탁시 경제성, 능률성도 주요하지만 공익성, 편의성 등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
- 답 :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승인 등 군민여론을 충분히 수렴도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3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